

창업학점 인정제

가. 개요

학생이 창업을 위한 준비활동(창업동아리)이 필요하여 해당 학기동안 활발한 창업활동을 통해 학습 목표의 달성이 가능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하는 교육과정으로, 창업과 창업활동으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

나. 학점인정기준

구분	교과명	이수구분	학점	이수학점	실습기간	성적평가	비고
창업실습	창업실습 I	교양선택	3학점	3~6학점	과목당(3학점) 최소 160시간	P or F	학기제
	창업실습 II		3학점				

다. 신청자격

구분	자격요건
창업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학생(1학년 2학기부터)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창업강좌를 2학점 이상 취득 대학에서 인정하는 창업동아리 소속(3인 이상 10인 이하의 동아리 참여)학생
기타	<p>* 창업강좌는 학점인정 강좌로써, 강좌명에 '창업', '벤처', '기업가정신', '사업계획서', '비즈니스 모델', 특히, '스타트업' 등 창업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강좌(바리스타, 프랜차이즈, 점포 창업 등 소상공인 창업강좌 제외)</p>

라. 교과운영 및 성적인정 절차

창업 학점 신청서 제출	⇒	요건확인	⇒	수강신청
'창업실습'		요건검토 확인		요건검토 확인 후 수강신청등록

마. 인정기준

구분	인정기준
창업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실습 주차별 활동일지(과제로 출석체크), 창업실습 월별 활동보고서, 창업실습 최종 결과보고서, 지도교수 평가서 등 시제품, 대·내외 입상 실적등 창업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결과물 제출